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59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095,104원, 지방교육세 7,109,51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를 본점으로 하여 염색가공업, 섬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산업단지 내 ① [redacted]시 [redacted]구 E 공장용지 9586.8㎡ 중 284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 연면적 5649.27㎡ 중 1451.7㎡, ③ 다동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공장(경비실)(연면적 40.8㎡)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원래 지번이 [redacted]시 [redacted]구 E이였고, 세로 18,350㎜, 가로 98,000㎜인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이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기존건물을 분할하여 그 중 세로 18,350㎜, 가로 56,000㎜를 매수하였다. 그로 인해 기존건물 중 매도인 C의 소유부분은 E으로 남았고, 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은 F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도 2015. 9. 25. E 가동과 F 나동[1]으로 각 이기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매수한 E 다동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공장(경비실)(연면적 40.8㎡)도 F 라동으로 이기되었다(이하 원고가 매수한 F 공장용지, F 나동과 F 라동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인 2015. 11. 5. 취득세 등 합계 168,355,4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매수한 세로 18,350㎜, 가로 56,000㎜ 건물의 일부인

1) 그 후 2016. 8. 18.에 이르러 F 나동에서 F 가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세로 18,350㎜, 가로 42,000㎜ 부분은 기둥과 슬래브만 남기고 철거한 뒤 잔존하게 된 기둥과 슬래브를 이용하여 건물을 증축하였고, 나머지 세로 18,350㎜, 가로 14,000㎜ 부분에 대해서는 기둥과 슬래브를 포함한 전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또한 C으로부터 매입한 공장용지 중 나대지에도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즉,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11. 24. ■■시에 건축허가(증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4. 피고로부터 건축(증축) 허가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공장건물을 신축, 증축한 뒤 피고로부터 2016. 7. 29. 건축물(증축허가) 사용승인과 함께 사용승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그와 같이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건물은 신축, 증축한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 증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위 F 나동 중 기둥과 슬래브만 남기고 철거한 세로 18,350㎜, 가로 42,000㎜ 부분은 잔존하는 기둥과 슬래브를 이용하여 기존의 2층 건물을 3층 건물로 증축하였다(별지 배치도 ①에 표시된 부분이다).

(2) 원고는 위 F 나동 중 세로 18,350㎜, 가로 14,000㎜ 부분은 기둥과 슬래브까지도 철거한 뒤 3층 높이에 해당하는 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별지 배치도 ②에 표시된 부분이다).

(3) 원고는 위 (1) 기존건물의 증축부분 일부 및 (2) 신축건물에 맞대어 나대지에 3층 높이의 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별지 배치도 ③에 표시된 부분이다).

(4) 원고는 기존건물의 증축부분 우측 나대지에 1층 건물을 신축하였다(별지 배치도 ④에 표시된 부분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5) 원고는 기존 경비실을 철거한 후 경비실을 새로 신축하였다(별지 배치도 ⑤에 표시된 부분이다).

라. 위 다.항의 신축, 증축을 마치기 전과 후의 건물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축, 증축 전(①)	신축, 증축 후(②)	신축, 증축 면적(②-①)
1층	805.1㎡	1839.99㎡	1034.89㎡
2층	646.6㎡	912.18㎡	265.58㎡
3층	0㎡	1673.42㎡	1673.42㎡
합계	1451.7㎡	4425.59㎡	2973.89㎡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으로 줄여 쓴다)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D산업단지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공장건물 2973.89㎡ 가량을 신축·증축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신축·증축한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2016. 10. 7. 피고에게 기납부한 취득세 중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2. "이 건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부분은 ⅰ) 나대지 상태인 토지 ⅱ)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ⅲ) 철거 중에 있어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법인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한 경우이므로 당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구를 하였으나 2017. 3. 31.경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4. 원고가 C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멸실하여 신축한 부분(별지 배치도 ②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분 취득세(부동산)에 대하여 25%를 감면하는 감액결의를 하였다(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감액결의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건물의 기둥과 슬래브만 남기고 멸실시킨 뒤 증축한 부분과 일부 신축한 부분[2]에 상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피고는 위 감액결의 당시 기존건물의 1/4이 멸실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이 신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4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는데(을 제10호증 참조), 피고가 멸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기존건물의 1/4이 위 다. 항의 신축부분 중 어느 부분까지를 포함하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축, 증축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감액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실,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을 신축, 증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건축"에 원고가 한 증축(별지 배치도 ① 부분)의 경우[3]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처럼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신축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증축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건축"에는 원고가 한 증축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축을 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그 증축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감액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주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부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그 부분이 특정이 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주로 "증축"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증축"에 관해서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건축"의 개념은 건축법의 정의에 따른다고 볼 것인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4]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건축"에는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건물 등의 건축을 장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호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증축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축의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거나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건축"을 반드시 피고처럼 나대지에 신축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증축의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단지 내에 토지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를 증축하는 경우 증축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한편, 이러한 경우 그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일 뿐 새로 토지를 "취득"하지는 않으므로, 그 증축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에 관한 취득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그 감면 여부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5]).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의 연면적을 1451.7㎡에서 4425.59㎡로 늘리고,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높이는 증축(신축 부분 포함)을 하였는바, 이러한 증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은 신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6]

③ 이 사건 규정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은 산업입지법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은 개정 규정의 "신축 또는 증축"을 이 사건 규정의 "건축"과 달리 규율하려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이 사건 규정의 "건축"이라는 용어를 "신축 또는 증축"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7]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의 "건축"에는 "신축"뿐만

5) 이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도 감면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6) 한편, 위와 같은 증축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면적(바닥면적)은 변경되지 않고 연면적과 층수, 높이가 늘어나는 증축의 경우 어느 규모로 증축되면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9층 건물에 1층만 더 증축한 경우처럼 소규모로 증축한 때에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면, 이 사건 규정이 취득세 면탈의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증축에 상응하는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아니라 "증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존건물의 1/4이 멸실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4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다만, 피고가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1/4이 어느 부분인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축한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에 관하여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한다.

4. 결론

7) 이 사건 규정의 위 문언이 자구수정될 당시인 2016. 12.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4187)에는 신 · 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 위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문에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규정에는 "건축"으로 표현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결국, 위 자구수정은 이 사건 규정의 "건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던 "신축 또는 증축"과 일치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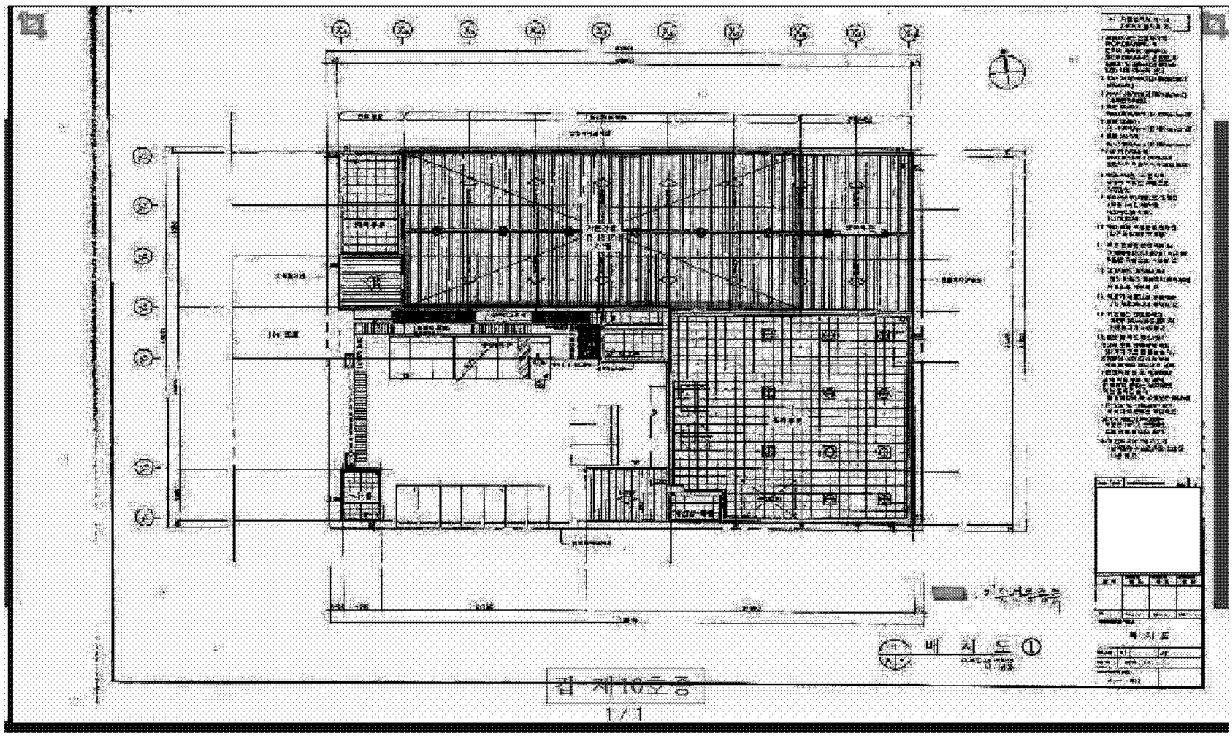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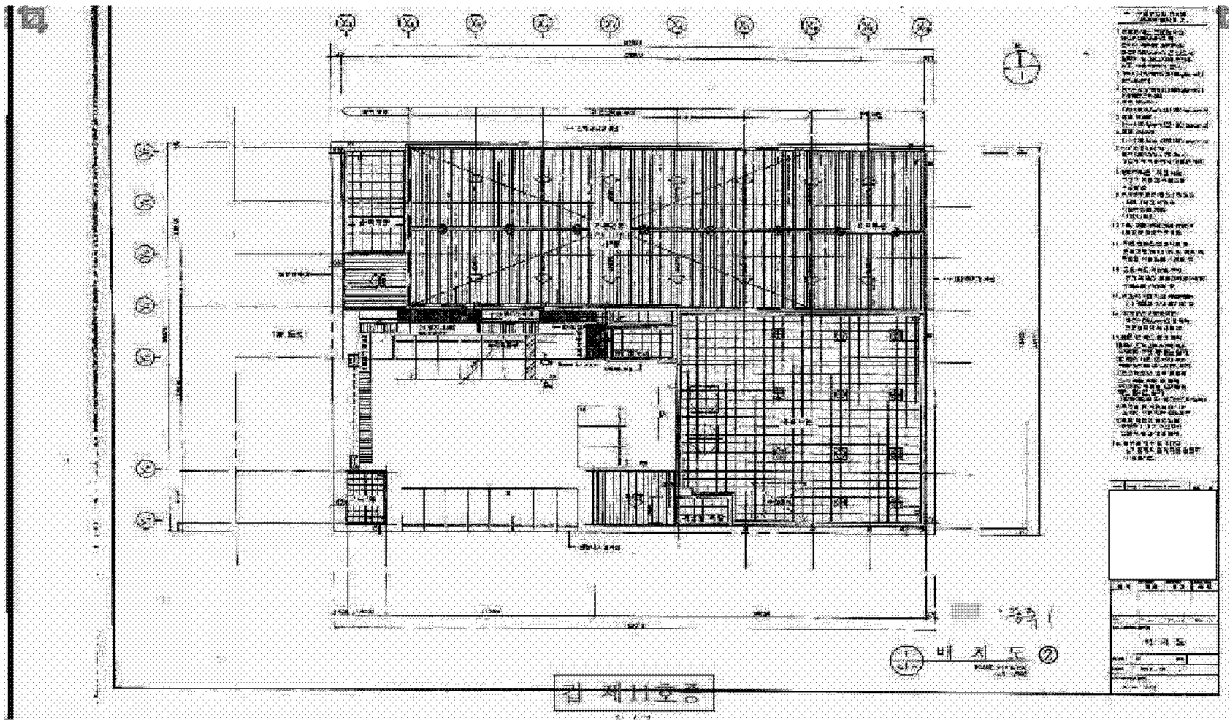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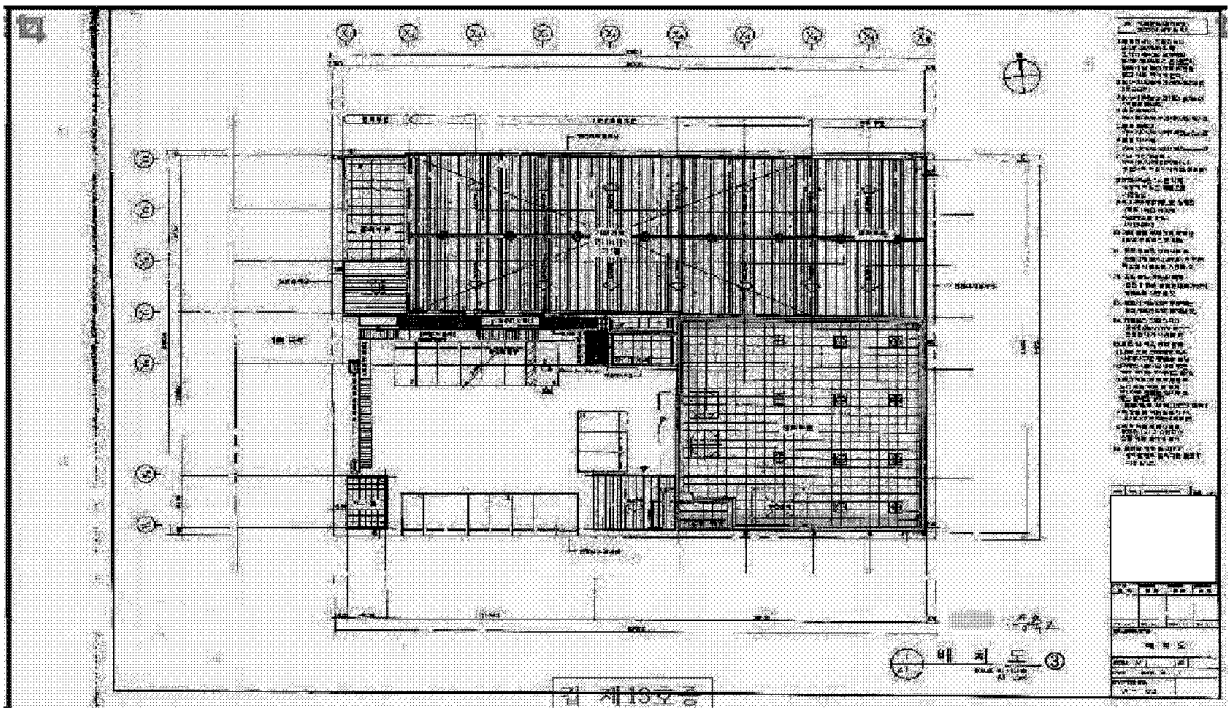
판사 강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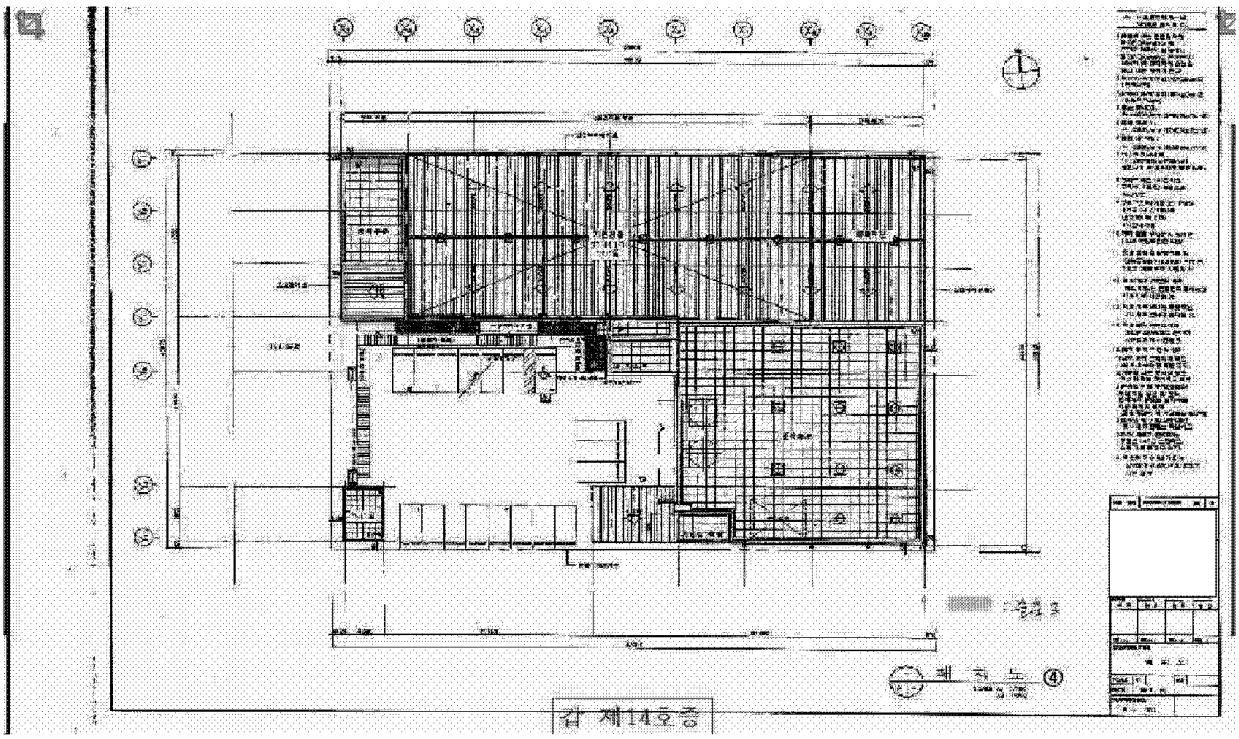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